

백영화 연구위원

요 약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각 입법예고하였음.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 기준과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관련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 외에도,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정비, 보험계약 이전 관련 조항 정비, 보험회사 소송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공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5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3월 12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각 입법예고하였음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도입 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¹⁾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함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 기준 마련(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 감독규정 개정안 제2-11조)
 -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그 세부 기준에 대해서 하위규정에 위임하였음
 - 그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및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에 대하여 규정함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²⁾을 감안하여,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보험금 및 보험료 등에 대해 제한함

〈표 1〉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 기준

최저자본금	20억 원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생명보험 책임·도난·유리·동물·비용·날씨보험 ³⁾ 질병·상해보험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	1년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금 상한액	5천만 원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500억 원

1) 2020. 12. 8. 개정, 2021. 6. 9. 시행

2) 일반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원칙적으로 300억 원인데 반하여,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임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정비(시행령 개정안 제59조, 감독규정 개정안 제5-13조 및 제5-13조의2)

-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신고가 아닌 사후 보고 대상으로 완화함
 -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후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자회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등임⁴⁾
-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① 신용정보법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② 개인의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⁵⁾를 주로 하는 회사가 추가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함
 - 기존에도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의 소유를 허용하였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기준 마련(시행령 개정안 제63조의2, 감독규정 개정안 제6-11조의4⁶⁾)

- 개정 보험업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외부검증 대상 보험회사, 외부검증의 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 ② 자산총액이 1조 원 미만이라도 생명보험(생명·연금), 제3보험(질병·상해·간병), 자동차보험 중 하나 이상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함
 -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①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②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임
 - 외부검증은 매년 1회 받아야 하며(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 보험회사는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음
 - 외부검증기관(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외부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보험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 검증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할 예정임

3)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문구에 의하면 손해보험 중에서 기술보험(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7호)도 포함되어 있으나, 입법예고 시 보도자료 및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 의하면 기술보험을 제외한 책임·도난·유리·동물·비용·날씨보험으로 설명하고 있음

4) 해당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보험업법 개정 전에는 사전 신고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후 보고 대상으로 완화되는 것임

5)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는 제외됨

6) 입법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 문구에 의하면 제6-11조 신설이라고 되어 있으나, 조문 체계상 제6-11조의4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여짐

○ 보험계약 이전 관련 조항 정비(시행령 개정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 개정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계약 이전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해당 통지는 서면,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음
-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 체결 금지 규제의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국내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자회사인 보험회사와의 합병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보험회사 소송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공시(감독규정 개정안 제7-46조)

-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회사별로 비교·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을 추가함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소송 현황과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도 공시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임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소송통제 강화방안⁷⁾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추진하는 것임

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2020. 11. 9),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